

심리상담 법령의 필요성*

이 상 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최근 국민들의 심리상담에 대한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심리상담센터가 기하급수적으로 개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 인한 피해보고 수치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비전문 심리상담사들로부터 내담자를 보호하는 국내의 현행 심리상담 법령을 점검하고 그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일본의 해외 심리상담 관련 법령을 상호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심리상담 법령 제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미국과 같이 인구가 많은 나라의 경우는 전문상담사법, 심리사법, 결혼및가족치료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법이 존재하나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국가의 경우, 너무 많은 심리상담 관련 법은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본 원고에서는 미국의 법령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은 통일된 성문법 국가의 법령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국내의 심리상담 영역분야 종사자들 스스로의 자정작업의 중요성과 전공 교과와 수련의 표준화 등의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령, 해외사례, 상담윤리, 상담법

* 본 연구는 2019년 상담정책포럼의 토론원고를 수정, 보완하여 작성된 원고임.

† 교신저자 : 이상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 02-3290-2306, E-mail : leesang@korea.ac.kr

저출산, 고령화, 비혼족, 1인 가구 증가, 이혼율 증가 등등 대한민국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심리건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예로 1990년대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사건 때는 심리 상담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되지 않았으나, 20년이 지난 2010년대에는 가슴기 살균제 사건, 세월호 사건 때 PTSD 등의 심리상담 용어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되었다. 대학알리미 자료(<http://academyinfo.go.kr>)에 의하면 현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심리상담’ 전공자로 학부 또는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다(이상민, 김은하, 선혜연, 김지연, 2018). 이렇듯 대학교와 대학원의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된 상담 관련 민간등록 자격증만도 4,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9). 현재 운영 중인 대학교의 학위과정과 심리상담 민간등록 자격증 운영기관이 모두 제대로 심리상담사를 교육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2019년 7월 달에 방영된 TV 프로그램(KBS, 2019)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원에 등재된 민간등록 자격증 중 다수의 심리상담사 1급 자격증이 10분 이내에 돈만 주면 딸 수 있는 자격증이였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4,000개가 넘는 심리상담 민간등록 자격증에 대한 전문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TV 프로그램에 적나라하게 방영된 것이다.

최근에 급격히 증가한 심리상담 센터의 몇몇 심리상담자들의 행태 역시 도를 넘어서고 있다. 증거(연구)기반 상담접근을 실무에 적용해야 하는 심리상담자가 아무런 윤리의식도

없이 내담자에게 해(harm)가 되는 행위를 하여 심리상담 분야의 전문성을 흔들고 있다. 돈을 벌려고 하는 영업행위만을 강조하여 1회 1시간에 50만원의 상담료를 갈취하고, 내담자와의 성관계를 치료의 일환이라고 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발각되었다(한국일보, 2018). 나아가 전자발찌를 찬 성폭행 가해자가 심리상담소를 차려놓고 상담 장면에서 자신의 성기를 그리게 하고 내담자들을 성추행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보도되었다(KBS, 2019). 무엇이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켰는가? 갑자기 늘어난 심리상담의 수요와 공급, 이에 따른 규제 부재 등이 아마도 이런 문제를 야기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답을 제도적인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현행 심리상담 관련 제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해외의 법령들을 살펴본 후, 해외 법령을 비교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함의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존하는 심리상담 관련 법령과 국가자격증의 문제점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상담정책포럼에서는 ‘심리상담 관련 법령이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하였으나 법령 문구로 심리상담이라는 용어가 없는 것이지 아예 심리상담 관련 법령과 자격증 등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김인규(2018)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다양한 상담관련 자격증에 따른 법령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상담관련 자격증에는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업상담사 등의 검정형 자격과 전문상담교사, 건강가정사, 성폭력상담원, 가

정폭력상담원 등 과정이수형 자격이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기본법¹⁾,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정신건강복지법²⁾에, 직업상담사는 국가기술자격법³⁾에, 전문상담교사는 초·중·등교육법⁴⁾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령⁵⁾에,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⁶⁾에, 성폭력상담원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⁷⁾에, 가정폭력상담원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⁸⁾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검정형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연수 등의 일련의 검정과정을 실시한 후 최종합격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과정이수형 자격은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다양한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과 법령 중에 한 예시를 들어서 이들 자격증과 법령의 한계점을 찾으면 다음과 같다. 여성가족부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상담사의 경우, 1급, 2

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1급 자격증의 경우 청소년상담을 주도하는 전문가로서 ‘지도인력’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의 역할과 직무, 나아가 윤리를 포함한 행동강령 역시 법령에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법령을 보면 1급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상담관련 분야의 박사를 받거나 또는 석사를 받은 후에 4년 이상 상담실무 경험이 있어야 하고 경쟁이 아주 치열한 필기와 면접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높은 역량이 필요하다⁹⁾.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은 상담 대상이 청소년에만 국한되어 있어 청소년 외의 대상(아동, 노인, 성인 등)에 대한 심리상담 영역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즉, 연령으로 본다면 청소년 외에 유아상담, 아동상담, 대학생상담, 성인상담, 노인상담 등에 대한 법령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국가자격증인 청소년상담사 1급 자격증은 높은 역량을 요구하는 상담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상담대상이 청소년에 국한된 자격증이기에 때문에 한국상담심리학회(상담심리사)와 한국상담학회(전문상담사)에서 발급하는 민간 심리상담사 자격증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개발한 청소년상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표와 민간 자격 뿐이 없는 심리상담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표를 비교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직종 간에 거의 모든 직무가 겹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직무 능력 단위에 심리 대신 청소년이라는 용어만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청소년상담사’와 ‘심리상담사’로 명칭은 다르나 그들이 하고 있는 직무는 거의 동

1) 청소년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824&efYd=20190619#0000>
 2) 정신건강복지법(약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470&efYd=20191024#0000>
 3) 국가기술자격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88713&efYd=20170328#0000>
 4) 초·중·등교육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5799&efYd=20190619#0000>
 5) 학교폭력예방법(약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40&efYd=20190901#0000>
 6) 건강가정기본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1170&efYd=20180717#0000>
 7) 성폭력방지법(약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51&efYd=20180914#0000>
 8) 가정폭력방지법(약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2648&efYd=20180914#0000>

9)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https://www.youthcounselor.or.kr:446/new/index.html>

일함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상담한다 하여도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족도 상담해야 하고 가족 중에는 부모도 있고, 조부모, 어린 동생도 있을 수 있기에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현실이라면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명칭을 그냥 모든 상담대상을 포함하여 ‘심리상담사’라고 바꾸어도 될 것이다.

청소년상담사와 같은 국가자격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 자격증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센터, 초·중·고등학교, 군대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혹은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에서 발행하는 심리상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을 취업 시 우대하며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는 민간 심리상담센터 등의 영역에서는 심리상담을 규정하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공인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민간 등록 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비전문가를 고용하기도 하고, 심지어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상담센터에서 성폭력 문제를 일으켜 구속되었던 성폭행 사범이 전자팔찌를 차고 다시 심리상담센터를 개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령이 아예 없다고 볼 수 있다. 비전문가들에 의해 개소된 심리상담센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오히려 심리상담 전문가들이 개소한 센터가 위협을 받게 된 상황에 도래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현재 민간등록 자격증을 관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책무인가,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의

책무인가? 아니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책무인가? 아니면 상담업무의 담당부처라고 되어 있는 교육부의 책무인가? 우리는 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외의 심리상담 관련 법령

심리상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오래된 미국의 경우, 연방(Federal)법으로는 찾을 수 없지만 주(State)법으로 심리상담사 법을 찾을 수 있다(Lee, 2017). 미국에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으로는 전문상담사 면허증(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 임상과 상담심리학자를 포함한 심리학자 면허증(licensed psychologists), 결혼 및 가족치료사 면허증(licensed marriage and family therapists), 학교상담사 자격증(school counselors), 재활상담사 자격증(certified rehabilitation counselors), 그리고 임상사회복지사 면허증(licensed clinical social workers) 등이 있다. 이 중 이 글에서는 전문상담사 면허증(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s)와 관련된 법령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970년대에 Virginia 주를 시작으로 하여 현재 District of Columbia, and Puerto Rico를 포함하여 미국의 50개의 모든 주에는 전문상담사 법이 있다. 이 중 Texas주의 법령(Statutes)¹⁰⁾을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Texas주의 법령을 살펴보면 면허가 있는 전문상담사(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전문상담 서비스가 무엇인지,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누구인지 등을 정의

10) Texas주 전문상담사 법령 사이트: <https://statutes.capitol.texas.gov/Docs/OC/html/OC.503.htm>

내리며, 전문상담사의 면허위원회(Texas State Board of Examiners of Professional Counselors)의 역할과 직무 등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또한 Texas주 상담전문가 면허위원회의 규율¹¹⁾에서는 상담자들의 자격과 윤리, 징계(상담자-내담자 성적 관계 정의, 징계 등 포함)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각각의 주별로 심리상담사 법령이 존재하는 미국과는 달리 독일에서는 국가 전체에 적용되는 심리의 심리치료사 및 아동·청소년 심리의 심리치료사 직업법(Gesetz über die Berufe des Psychologischen Psychotherapeuten und des Kinder-und Jugendlichenpsychotherapeuten)¹²⁾이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심리상담사(psychological counselor)가 아닌 심리의 심리치료사(psychological psychotherapis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독일의 심리상담 법령을 살펴보면 독일에서의 심리치료사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고, 심리치료 서비스가 무엇인지, 심리치료 서비스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나아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는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또한 면허위원회를 두고 상담자들의 자격과 징계 등등에 대해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과는 다르게 심리치료사 관련 법령 내에 교육내용 및 수련시간, 권한, 법령 위반시의 징계 등에 대한 것이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독일의 심리치료사 자격증의 경우에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어느 정도의 통용이 가능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독일 심리치료사의 자격증이 독일 뿐만이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리상담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아시아의 경우에도 심리상담 관련 면허법이 존재하는 국가들이 있다. 가장 선두주자는 말레이시아인데 1998년에 상담사법(Counsellors Act 1998, Act 580)¹³⁾을 제정하여 상담서비스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See & Ng, 2010). 말레이시아의 상담사법을 살펴보면 미국의 법령과 비슷하게 상담법령에는 상담의 정의, 서비스의 범위, 그리고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면허위원회가 따로 윤리규정과 규칙을 보유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말레이시아의 상담사 면허위원회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복지부의 대표자 1명, 교육부에서 1명, 보건부에서 1명, 이슬람 발달부에서 1명, 공공서비스부에서 1명, 행안부에서 1명, 대학교에서 3명, 그리고 6명의 상담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말레이시아에 이어 대만의 경우에도, 2001년도에 심리사법(Psychologists Act)¹⁴⁾을 통과시켜 상담심리학자와 임상심리학자들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심리상담서비스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대만에서는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상담심리와 임상심리를 나누어 각각의 서비스 범위를 구분하고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상담자(school counsellor)의 경우에는 학교상담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심리사

11) Texas 면허위원회 규정: <https://www.dshs.texas.gov/counselor/pdf/LPC-Rules-20190228.pdf>
 12) 독일의 심리치료사법: <http://www.gesetze-im-internet.de/psychthg/index.html>

13) 말레이시아 상담사법: <http://www.agc.gov.my/agcportal/uploads/files/Publications/LOM/EN/Act%20580.pdf>
 14) 대만의 심리사법(영문):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20098>

법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hang & Bhat, 2013). 나아가 우리나라 법령의 형태와 같이 심리사법 외에 심리사법 시행규칙(Enforcement rules)¹⁵⁾을 마련하여 심리사법에 대한 세세한 규칙을 규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심리상담 관련 법이 통과되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교육부)와 후생노동성(고용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2015년 9월에 공인심리사법령이 제정된 후, 2017년 9월에 시행규칙이 만들어지고, 2018년 4월에 공인심리사법¹⁶⁾이 시행되었다. 일본의 법령과 시행규칙 역시 대만의 법령과 시행규칙과 비슷하게 공인심리사 서비스의 정의, 범위, 자격증 취득 요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미 많은 국가들에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자격 및 서비스의 범위,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정의 및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징계 등을 공인된 법령 하에 관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잇따르는 현대사회에서 심리상담적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 상담 서비스 관련 문제들은 점차 더 심각해지고 발생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공인된 법령의 제정과 체계적인 관리가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5) 대만의 심리사법 시행규칙(영문): <https://law.moj.gov.tw/ENG/LawClass/LawAll.aspx?pcode=L0020101>

16) 일본의 공인심리사법: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16049.html>

해외의 심리상담 관련 법령 비교와 우리나라의 법제정의 함의

미국, 독일,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심리상담사 법령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미국의 경우 연방법이 없고 50개 이상의 주법으로 심리상담 법령이 존재하기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호환성(portability)의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주에서는 전문상담사법이 고용노동부(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어떤 주는 복지부(미시간, 아이오아), 어떤 주는 교육부(뉴욕) 관할이고, 어떤 주는 보건부(노스캐롤라이나)가 관할하고 있다(Lee, 2017). 나아가 심리사법, 전문상담사법, 결혼및가족상담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이 각각 따로 존재하기에 그에 따른 행정적인 부담(burden)이 있다. 나아가 미국의 심리상담 관련 법령은 상담의 정의, 상담의 범위, 자격의 요건, 그리고 면허위원회의 역할 등만을 담고 있고, 대부분의 자격 수련과정 및 상벌징계, 상담자의 직무와 역할, 상담윤리 등등의 내용은 면허위원회 규정에 따라 제도화하고 있다. 즉, 면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고 있는 형태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보통법·판례법을 따르고 있기에 가능한 형태라고 보인다.

보통법·판례법의 영미법을 따르는 미국과는 다르게 성문법의 대륙법을 따르는 독일의 경우, 심리상담의 정의와 심리상담사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술된 심리정신치료사 및 아동정신심리치료사법이 존재하고 있다. 즉, 면허위원회의 별도의 규정이 아닌 법령상에 상담자의 직무와 역할, 상담윤리, 상담 수련과정, 상벌규정 등등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독일의 심리치료사법은 유럽연

합(EU) 내에서 호환이 가능한 점에서 미국에 비해 훨씬 더 적용범위가 확장되어 있고 행정적 부담이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국가인 말레이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의 심리상담 법령을 살펴보면, 말레이시아는 상담사법이라는 명칭으로 대만과 일본은 심리사법이라는 명칭으로 심리상담 법령을 제정하였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면허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양한 정부부처의 사람들이 위원회 활동을 하게 하였다. 나아가 특정 대학의 상담 석·박사 프로그램만을 나온 인원만이 상담자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였다. 이렇게 면허를 받는 대상을 제한하므로 상담사의 인원을 적정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상담사만을 중심으로 법령을 만든 말레이시아와는 다르게 대만의 경우 심리사법 내에 임상과 상담을 구분하여 두 직종의 차이점을 법령에서 분명히 기술하였다. 임상심리학자의 경우는 정신이상과 뇌정신기능장애(psychosis or cerebral mental functions)에 대한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반면 상담심리학자는 일반인에 초점을 두어 상담실무를 하는 것만이 가능한 것으로 법에 기술되어 있다. 대만의 경우,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심리사법을 관할하고 있다. 임상과 상담심리를 법령에서 구분한 대만과는 다르게 일본의 경우는 임상과 상담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공인심리사가 병원, 개인상담소, 그리고 학교까지 모두 포괄하여 심리상담 실무를 할 수 있게 법령이 제정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의 공인심리사법은 문무과학성(교육부)과 후생노동성(고용복지부)에서 공동으로(jointly) 관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과 같이 큰 나라가 아니며 보통법/판례법이 아닌 성문법의 나라

인 만큼 독일, 대만, 일본의 법령을 조금 더 참조해서 법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즉, 면허위원회 규정으로 상담자 직무와 역할 그리고 상벌윤리규정을 두기 보다는 독일, 대만, 일본과 같이 심리상담법의 시행규칙(Enforcement rules)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국과 같이 심리사법, 전문상담사법, 결혼및가족상담사법, 임상사회복지사법 등으로 나뉘어서 국가 행정적 부담을 주는 것 역시 지양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대만과 같이 임상심리학자와 상담심리학자를 묶어서 심리사법을 만드는 방식으로 행정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심리상담 분야의 관할부처의 경우는 5개 이상의 정부부처가 함께 면허위원회를 구성한 말레이시아의 모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지 말레이시아의 모형을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특정 주무부처가 없어서 오히려 부처간 책무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서로 떠맡기 행정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에 Chang과 Bhar는 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 같이 심리상담사법이 있는 나라를 소개하며, 한국과 일본은 심리상담 자격증이 존재하나 이러한 자격증을 정부가 관할하지 않으며 심리상담 전문 학회에서 관할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2018년부터 공인심리사법을 시행하여 국가가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시대적 상황과 실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국가가 관할하는 심리상담법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내의 심리상담 자격증을 관리하는 대형 학회인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의 입장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 자격증의 질 관리를 잘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령 없이도 잘 유지해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Lee, Suh,

Yang, & Jang, 2012; Seo, Kim, & Kim, 2007). 그러나 학회의 윤리규정은 학회 소속의 회원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학회원이 아닌 비전문적 심리상담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할 수 없다. 현재 발생하는 많은 심리상담 문제들이 전문 자격증을 갖지 않은 비전문적 심리상담자임을 고려할 때, 학회원이 아닌 비전문가가 심리상담 센터를 개소하고 비전문적인 상담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법령이 요구되어진다.

결 언

앞서 언급했듯이 심리상담 분야는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렇게 상담 분야가 급성장하게 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상담 전공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해 알아가는 상담공부가 흥미롭다는 매력과 동시에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사 등과 비슷하게 “심리상담전문가”라는 전문적 타이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이상민 등, 2018). 그러나 심리상담자 면허증이 없이 아무나(성폭행범조차) 상담센터를 열 수 있는 현실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심리상담전문가”라고 명명할 수 있는 것일까? 김인규(2018)는 우리나라는 상담관련 교육과 서비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상담자의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인규(2018)는 독점적 국가자격의 부재, 실무능력 훈련과 검정의 부족, 체계적 관리체제 부족 및 상담서비스의 일정한 질을 담보하는 자격의 기준 및 자격관리 체제가 부재하다고 지적하면서 상담자격운영체제 구

축을 위한 상담법을 제정하고 상담자격의 체계적 질 관리를 위한 NCS 기반 상담자격제도의 시행과 각 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상담자격을 연계하는 상담교육 인증제도를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로봇이 발달하면 나중까지 남는 유력한 직업분야중 하나는 인간에 대한 심리서비스 일자리일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심리건강 서비스는 매우 중요한 서비스 영역이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확대될 유망한 분야라 사료된다(상담인적자원 개발위원회, 2019; 이상민 등, 2018). 하지만 무법지대인 심리상담 분야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심리상담 분야의 앞날을 밝게만 전망할 수는 없다. 솔직히 면허증 형태의 심리상담 모(母)법이 없이, 정부의 특정 부처의 요구에 따라 특정 대상(청소년상담사 등), 특정 영역(직업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등), 특정 분야(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법령을 먼저 제정했던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돌아보게 된다. 어쩌면 아주 초창기 심리상담 분야의 탄생시점(1987년-임상과 상담심리의 분리), 그리고 초창기 발전시점(2000년-상담심리학회와 상담학회의 분리)에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국민 심리건강에 도움을 주는 심리상담 분야가 오히려 비전문가들에 의해 국민의 심리건강에 해를 끼치는 지금의 형국이 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이러한 수많은 내부의 이해관계자(예: 기존 국가 및 민간 자격증 소지자들)간의 충돌로 인해 우리나라 심리상담의 미래의 발전이 지연될 수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추세를 보면 한 기업, 한 사무실에 함께 근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프리랜서, 외부 하청, 용역으로 흩어져 일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버와 에어비엔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심리상담 분야 역

시 비교적 최근에 발전된 직업이기 때문인지 이와 유사하게 계약직 용역, 프리랜서, EAP 등의 이름으로 노동의 형태가 급진전되고 있다(상담인적자원 개발위원회, 2019). 특히 현재 심리상담과 관련된 정부의 규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상담 분야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를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10분 만에 심리상담 자격증을 딴 비전문가들에 의해 양질의 심리상담 직업은 점점 사라지고, 우후죽순으로 더 많은 상담센터가 생길 것이며, 지금보다 훨씬 많은 내담자들이 피해를 신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착실하게 역량을 쌓고, 체계적 단계를 밟아 자격증을 갖춘 전문심리상담가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비전문심리상담가들의 만행으로 내담자 뿐만 아니라 소규모나 혼자 개업한 전문심리상담가들의 피해 역시 빈번히 발생할 것이다(이상민 등, 2018).

따라서 필자는 현재가 우리나라 심리상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심리상담 분야의 미래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인식과 자정 작업이며 무자격의 비전문적 심리상담가들의 활동을 막고 양질의 상담자를 배출해내는 교육과정의 표준화, 그리고 정당한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작게는 우리 스스로 심리상담 전문가란 누구인가를 알려야 할 것이고, 비전문가의 만행과 폐단에 대해서 국민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나아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심리상담자 교육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심리상담자에게 법적인 의미를 부여함과 동시에 권리(예. 임금과 지위 향상)를 보장하며 법을

위반할 시 징계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심리상담사 면허증 관련법 제정이 중요하다(김정진, 2016). 이를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부처의 입법 전문가들과 함께 선진국의 상담 노동시장 실태 조사, 안정적 고용모델 개발과 홍보, 상담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예. 바우처 제도와 보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김영근 등, 2012).

연구자는 어디서부터 이러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 스스로 질문을 많이 하곤 한다. 예를 들어, 해외의 사례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심리상담 영역을 관할해 줄 부처는 어디인가? 보건복지부인가? 아니면 교육부, 고용노동부, 혹은 여성가족부인가? 이미 무수한 심리상담 민간자격증과 심리상담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들 자격증과 심리상담센터들은 앞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까? 나아가 심리상담 관련 학과와 대학원 역시 이미 무수히 많이 생겼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들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정책적 질문에 대해서 상담심리학자들만이 답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법률 관련 전문가들과의 협조를 통해 기초와 실무연구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미래의 심리상담 분야에 대해 단순히 장밋빛 전망만을 하기 보다는 현실에 기초한 분석과 판단을 통한 입법 관련 기초연구와 실무연구를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

- 료, 24(3), 641-670.
-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2019). 상담사법 입법추진과 상담분야의 시사점. 서울: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민간자격정보서비스 (2019). 민간자격검색. <https://pqj.or.kr/inf/qul/infQulList.do>에서 검색.
- 이상민, 김은하, 선혜연, 김지연 (2018). 상담심리학의 현재와 미래과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63-474.
- 한국일보 (2018, 09, 19). 성폭력 트라우마 치료해준다며 성폭행한 유명 심리상담사.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9181627749020>에서 검색.
- Chang, S. & Bhat, C. S. (2013). Counselling licensure in Taiwan. *Asia Pacific Journal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4(1), 57-65.
- KBS (2019, 07, 19). 실태점검 심리상담소가 위협하다. http://vod.kbs.co.kr/index.html?source=episode&sname=vod&stype=vod&program_code=T2000-0088&program_id=PS-2019099969-01-000§ion_code=05&broadcast_complete_yn=N&local_station_code=00§ion_sub_code=06에서 검색.
- Lee, A. (2017).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provisions regarding to counseling profession in the US and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Lee, S. M., Suh, S., Yang, E., & Jang, Y. (2012).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90, 494-499.
- See, C. M., & Ng, K.-M. (2010). Counselling in Malaysia: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trend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8(1), 18-22.
- Seo, Y. S., Kim, D. M., & Kim, D. I. (2007).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Korea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clinical training, and job placement. *Applied Psychology: An International Review*, 56, 107-118.

원 고 접수 일 : 2019. 09. 30

수정원고접수일 : 2019. 11. 01

게재결정일 : 2019. 11. 11

The Need for Statutes in the Field of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Sang-min Lee

Korea University / Professor

As the need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s has increased in South Korea, psychological counseling centers have proliferated. As such, concerns about unprofessionalism and potential ethical problems have also increased. This manuscript examined and analyzed the limitations of current statut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in South Korea. Additionally, statut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Malaysia, Taiwan, and Japan were compared and analyzed to derive information that could help with the enactment of statutes in South Korea. It was determined that models from smaller countries with unified laws such as Germany, Taiwan, and Japan would provide the best road-map for statute implementation in South Korea. Finally, the author discusses the importance of self-reflection and self-improvement by individuals in the psychological counseling field as well as standardiz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Key words : *psychological counseling, statutes for psychological counseling, overseas cases, counseling ethics, counseling law*